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53787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12. 30 선고 2015나20445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합537873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 선고 2015. 7. 8.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338,986원 및 그 중 368,554,070원에 대한 2014. 4. 14.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370,968,8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E은 원고에게 370,968,8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원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경위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07. 6. 4.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2,000만 원, 보증기간은 2014. 11. 2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그 후 피고 A은 2009. 2. 9.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0. 2.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4. 2. 7.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9. 2. 11.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 A은 2013. 6. 13.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1억 5,552만 원, 보증기한은 2014. 6.

1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9,44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피고 B, C, D은 위 제1, 2, 3차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통칭한다) 체결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중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사전구상)

① 피고 A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제9조(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 A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1.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2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14.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369,099,7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의 대출금 대위변제일인 2014. 4. 14.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A의 구상금 채무액은 합계 369,338,986원(= 대위변제금 369,099,770원 + 위약금 784,700원 + 지연손해금 216원 - 회수금액 545,700원)이다.

다. 피고 C와 피고 E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C는 피고 E으로부터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3. 1. 30. 5,000만 원, 2013. 2. 12. 3,000만 원, 2013. 4. 17. 1억 1,500만 원, 2013. 5. 31. 5,000만 원, 2013. 6. 17. 500만 원, 2013. 6. 29. 2,500만 원, 합계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이후 피고 C와 피고 E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3. 7. 25.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8,48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경기화성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 8,000만 원)의 피담보채무 5억 2,000만 원을 피고 E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 C가 피고 E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차용한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2013. 9. 13.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 E은 2013. 10.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평택과수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2013. 10. 4. 경기화성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2013. 10. 7.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 D에 대한 각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69,338,986원 및 그 중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368,554,070원(= 대위변제금 369,099,770원 - 회수금액 545,70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4. 6. 19.까지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보증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4. 4. 14.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2007. 6. 4., 2009. 2. 9. 및 2013. 6. 13.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은 원고가 보증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외에도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9억 6,600만 원에 달하는 또 다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불과 6개월이 채 지나지 못한 시점인 2014. 1.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이미 피고 A의 재정상태는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나아가 피고 A의 사업장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3. 7. 5. 피고 C의 채권자인 서보산업 주식회사¹⁾의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가 2013. 7. 25.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 E에게 매각되었는바, 피고 A로서는 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구상보증채권의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이후 위와 같은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은 대출이자 연체로 인해 2014. 2.경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보증채권을 실제로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구상보증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C의 채무초과상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F의 시가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 경기화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890,968,87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천안시 동남구 G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보증채무 369,338,986원²⁾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억 2,557만 원, 경기화성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2,000만 원, 피고 E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7,5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억 200만 원, 서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7,667,400원,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480만 원, 롯데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160만 원, 삼성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30만 원,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8만 원 등 1,806,456,386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 C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위 구상보증채무와

국민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억 2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800만 원,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대출금채무 58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 E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E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 890,968,87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기화성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액은 5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 피고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경기화성새마을금고에 위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370,968,870원(= 890,968,870원 - 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은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70,968,8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E은 아무런 담보 없이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채 합계 2억 7,500만 원의 거액을 대여할 정도로 피고 C와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A은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인데, 피고 E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지속적으로 합계 2억 7,500만 원에 달하는 회사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오다가 2013. 7. 25.경에 이르러 피고 C로부터 피고 A의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고 A과 피고 C, D의 자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서증으로 제출한 을마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E에 대한 위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김중원

판사 한동석

판사박민

별지

1) 피고 A의 사업장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사전구상권 발생사유이기도 하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원고에 대한 구상보증채무도 피고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